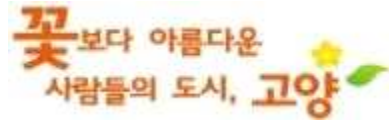


【제 1335 호】



2016년 12월 27일 (화)

고양시보

차 례

입법예고

고양시 공고 제2016-1935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고양시 공고 제2016-1937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공 고

고양시 공고 제2016-1927호	고양시 원당재정비축진지구 원당5구역 행위 등의 제한 해제 공고	17
고양시 공고 제2016-193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162호선(화전취락)]사업 사업 인정에 관한 주민등의 의견 청취 공고	18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104만 고양시민을 위한 민생안정·지역경제활성화 등 핵심사업과 국가정책 추진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기구·정원 조정

3. 주요골자

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도시주택국에 관련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도시주택국장과 미래전략국장의 분장사무를 조정(안 제10조의2, 안 제12조)

나. 「지역보건법」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위치·관할구역을 명시(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별표1)

다. 감염병대응 등 국가정책 추진, 통일 한국의 실리콘밸리 사업과 택지개발에 따른 덕양구 행정수요 증가 등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정원 총수 변경(안 제31조)

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 제33조, 안 별표6)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인적자원담당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주교동)

○ 전 화 : 인적자원담당관 조직교육팀 (031-8075-2394)

○ 팩 스 : 031-8075-490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①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실·국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담당관·단장·동장 등의 직급과 과·담당관·단의 세부적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통일한국 실리콘밸리추진단,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보건소,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한다.

② 「지역보건법」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둔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564명”을 “2,58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528명”을 “2,552명”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보건소,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하고, 고양시 덕양구보건소란 다음에 덕양구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고양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덕양구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고양	고양시 덕양구 혜음로 19-11	덕양구 고양동
-----------------------	-------------------	---------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고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고양시장의 보조기관 중” 을 “고양시” 로 하고, 같은 호 중 “과장급” 을 “과장, 단장급”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담당관·과장” 을 “담당관·과장·단장” 으로 한다.

2.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국·소장(담당관, 과장 포함)” 을 “실·국·소장(담당관, 과장, 단장 포함)” 으로 한다.

3. 「고양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구의 행정지원과장” 을 “구의 자치행정과장” 으로 한다.

4. 「고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본부) 및 과·담당관” 을 “실·국 및 과·담당관·단” 으로 한다.

5.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담당관·과장” 을 “담당관·과장·단장” 으로 한다.

6. 「고양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담당관·과장” 을 “담당관·과장·단장” 으로 한다.

7. 「고양시 예산집행 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과장” 을 “과장·담당관·단장” 으로 하고, “국장” 을 “실·국장” 으로 한다.

소 관 과		인적자원담당관
입 안 자	과 장 직위·성명	인적자원담당관 명 재 성
	팀 장 직위·성명	조직교육팀장 정 재 선
	담 당 자 성명·전화	박 순 영 (031-8075-2394)

[별표 6]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3조 관련)

(단위: 명)

직급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구	동
합계		2,588	-					
정무직	소계	1	-					
	시장	1	1	-	-	-	-	-
일반직	소계	2,555	-					
	2급	2	2	-	-	-	-	-
	3·4급	3	2	1				
	4급	16	6	-	3	4	3	-
	5급	133	38	5	6	15	30	39
	6급 이하	2,397	-					
	전문경력관 소계	4	-					
별정직	소계	5	5					
	5급 상당	1	1					
	6급상당 이하	4	4					
지도직	소계	20	-					
	지도관	3			3			
	지도사	17	-					
연구직	소계	7	-					
	연구사	7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국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 등) ①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국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②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담당관·동장 등의 직급과 과·담당관의 세부적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0조의2(미래전략국에 두는 과) ① (생략)</p> <p>② (생략)</p> <p>1.~2. (생략)</p> <p>3. <u>기업유치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u></p> <p>4.~10. (생략)</p> <p>제12조(도시주택국에 두는 과) ① 도시주택국에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도시재생과, <u>도시계획상임기획단</u>을 둔다.</p> <p>② (생략)</p> <p>1.~10. (생략)</p> <p><신 설></p> <p>11. (생략)</p> <p>제13조(설치) ① (생략)</p> <p>② 「지역보건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보건지소를 둔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된 <u>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u></p> <p>제31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2,564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u>2,528명</u></p> <p>2. (생략)</p>	<p>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①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실·국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②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담당관·단장·동장 등의 직급과 과·담당관·단의 세부적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0조의2(미래전략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2.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4.~10. (현행과 같음)</p> <p>제12조(도시주택국에 두는 과) ① <u>통일한국 실리콘밸리추진단, 도시계획상임기획단</u>.....</p> <p>② (현행과 같음)</p> <p>1.~10. (현행과 같음)</p> <p>11. <u>기업유치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u></p> <p>12. (현행 제11호와 같음)</p> <p>제13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지역보건법」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둔다.</p> <p>③ <u>보건소,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u>.....</p> <p>제31조(정원의 총수) 2,588명</p> <p>1. <u>2,552명</u></p> <p>2. (현행과 같음)</p>

현 행

[별표 1]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3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33번길 28	덕양구 일원
<신 설>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일산동구 일원
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	고양시 일산서구 일중로 54	일산서구 일원
일산서구보건소 가좌보건지소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3로 16	일산서구 송포동, 송산동

[별표 6]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3조 관련)

(단위 : 명)

직급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	동	
합계	2,564	-						
정무직	소계	1	-					
	시장	1	1	-	-	-	-	
일반직	소계	2,531	-					
	2급	2	2	-	-	-	-	
	3·4급	3	2	1				
	4급	16	6	-	3	4	3	
	5급	132	37	5	6	15	30	
	6급 이하	2,374	-					
	전문경력관 소계	4	-					

개 정 안

[별표 1]

보건소,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3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33번길 28	덕양구 일원
덕양구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고양	고양시 덕양구 혜음로 19-11	덕양구 고양동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일산동구 일원
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	고양시 일산서구 일중로 54	일산서구 일원
일산서구보건소 가좌보건지소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3로 16	일산서구 송포동, 송산동

[별표 6]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3조 관련)

(단위 : 명)

직급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	동	
합계	2,588	-						
정무직	소계	1	-					
	시장	1	1	-	-	-	-	
일반직	소계	2,555	-					
	2급	2	2	-	-	-	-	
	3·4급	3	2	1				
	4급	16	6	-	3	4	3	
	5급	133	38	5	6	15	30	
	6급 이하	2,397	-					
	전문경력관 소계	4	-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31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정원 변동에 따른 인건비 증가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17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공무원 24명 정원 증가로 인한 인건비 상승분임. ⇒ 5급 1명, 6급 이하 23명
- 2017명 보수표가 확정되지 않아, 2016년 지방공무원 보수표를 적용하며, 채용시기 등에 따라 소요액이 변경될 수 있음.

직	급	인원(명)	기준단가(백만원)	산출금액(백만원)	비 고
총계(5년간)				5,398	인건비 연간 3% 인상 추계 반영
합계(2017년)		24	-	947	2월 임용 가정
2018년~2021년		24	-	4,451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인 건 비	5,398	947	1,064	1,096	1,129	1,163

다. 채용조달방안 : 2017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해당없음

4. 작성자 : 인적자원담당관 명 재 성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	-	-	-	-	-
		-	-	-	-	-	-
세 출		947	1,064	1,096	1,129	1,163	5,398
인건비		947	1,064	1,096	1,129	1,163	5,398
재원 조달		947	1,064	1,096	1,129	1,163	5,398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자체 수입	소 계	947	1,064	1,096	1,129	1,163	5,398
	지방세	947	1,064	1,096	1,129	1,163	5,398
지방채			해	당	없	음	
기 금			해	당	없	음	
공기업 특별회계			해	당	없	음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해	당	없	음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구청장에게 위임하였던 도로개설공사 일부를 공사전문 사업부서(공사과)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가로청소 대행사업의 계약 및 지도·감독 권한을 구청장으로 일원화 하는 등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

3. 주요골자

가. 구청장에게 위임하였던 12m 미만 도로개설공사의 범위를 8m 미만으로 축소하여 8m 이상 사업을 공사전문 사업부서(공사과)에서 시행하도록 함.(안 별표 1)

나. 가로청소 대행사업 계약사무를 구청장 위임사무에 추가함.(안 별표 1)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인적자원담당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 전 화 : 인적자원담당관 조직교육팀 (031-8075-2398)
- 팩 스 : 031-8075-490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도로정책과 위임사무 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8. 도로공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폭원 8m 미만의 도로(자전거도로 제외) 및 도로의 부속물 공사 2. 폭원 8m 미만의 도로(자전거도로 제외) 및 도로의 부속물 공사 시행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도로법」 제31조 같은 법 제82조

별표 1의 청소행정과 위임사무 중 제1호에 단위사무명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8. 생활폐기물의 처리(보행자전용 도로를 포함한 가로청소에 한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도로정책과 위임사무 제8호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완료되는 건부터 적용한다.

소관과		인적자원담당관
입 안 자	담 당 관 성 명	인적자원담당관 명 재 성
	팀 장 성 명	조직교육팀장 정 재 선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근 영 (031-8075-2398)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도로정책과]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도로정책과]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위임사무명</th> <th style="width: 33%;">단 위 사 무 명</th> <th style="width: 33%;">근 거 법 규</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2px;">1. ~ 7. (생 략)</td> <td></td> <td></td> </tr> <tr> <td style="padding: 2px;">8. (생 략)</td> <td style="padding: 2px;">1. 폭원 <u>12m</u>미만의 도로(자전거도로 제외) 및 도로의 부속물 공사</td> <td style="padding: 2px;">「도로법」 제31조</td> </tr> <tr> <td></td> <td style="padding: 2px;">2. <u>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u></td> <td style="padding: 2px;">같은 법 제82조</td> </tr> <tr> <td style="padding: 2px;">9. ~ 15. (생 략)</td> <td></td> <td></td> </tr> </tbody> </table>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 7. (생 략)			8. (생 략)	1. 폭원 <u>12m</u> 미만의 도로(자전거도로 제외) 및 도로의 부속물 공사	「도로법」 제31조		2. <u>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u>	같은 법 제82조	9. ~ 15. (생 략)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위임사무명</th> <th style="width: 33%;">단 위 사 무 명</th> <th style="width: 33%;">근 거 법 규</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2px;">1. ~ 7. (현행과 같음)</td> <td></td> <td></td> </tr> <tr> <td style="padding: 2px;">8. (현행과 같음)</td> <td style="padding: 2px;">1. 폭원 <u>8m</u>미만의 도로(자전거도로 제외) 및 도로의 부속물 공사</td> <td style="padding: 2px;">.....</td> </tr> <tr> <td></td> <td style="padding: 2px;">2. <u>폭원 8m미만의 도로(자전거도로 제외) 및 도로의 부속물 공사</u> 시행을 위한 <u>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u></td> <td style="padding: 2px;">.....</td> </tr> <tr> <td style="padding: 2px;">9. ~ 15. (현행과 같음)</td> <td></td> <td></td> </tr> </tbody> </table>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 7.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1. 폭원 <u>8m</u> 미만의 도로(자전거도로 제외) 및 도로의 부속물 공사		2. <u>폭원 8m미만의 도로(자전거도로 제외) 및 도로의 부속물 공사</u> 시행을 위한 <u>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u>	9. ~ 15. (현행과 같음)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 7. (생 략)																															
8. (생 략)	1. 폭원 <u>12m</u> 미만의 도로(자전거도로 제외) 및 도로의 부속물 공사	「도로법」 제31조																													
	2. <u>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u>	같은 법 제82조																													
9. ~ 15. (생 략)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 7.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1. 폭원 <u>8m</u> 미만의 도로(자전거도로 제외) 및 도로의 부속물 공사																													
	2. <u>폭원 8m미만의 도로(자전거도로 제외) 및 도로의 부속물 공사</u> 시행을 위한 <u>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u>																													
9. ~ 15. (현행과 같음)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위임사무명</th> <th style="width: 33%;">단 위 사 무 명</th> <th style="width: 33%;">근 거 법 규</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2px;">1. (생 략)</td> <td style="padding: 2px;">1. ~ 7. (생 략) <u><신 설></u></td> <td></td> </tr> <tr> <td style="padding: 2px;">2 ~ 4 (생 략)</td> <td></td> <td></td> </tr> </tbody> </table>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생 략)	1. ~ 7. (생 략) <u><신 설></u>		2 ~ 4 (생 략)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위임사무명</th> <th style="width: 33%;">단 위 사 무 명</th> <th style="width: 33%;">근 거 법 규</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2px;">1. (현행과 같음)</td> <td style="padding: 2px;">1. ~ 7. (현행과 같음)</td> <td></td> </tr> <tr> <td></td> <td style="padding: 2px;">8. <u>생활폐기물의 처리(보행자전용도로를 포함한 가로청소에 한한다)</u></td> <td style="padding: 2px;">「폐기물관리법」 제4조</td> </tr> <tr> <td style="padding: 2px;">2 ~ 4. (현행과 같음)</td> <td></td> <td></td> </tr> </tbody> </table>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8. <u>생활폐기물의 처리(보행자전용도로를 포함한 가로청소에 한한다)</u>	「폐기물관리법」 제4조	2 ~ 4. (현행과 같음)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생 략)	1. ~ 7. (생 략) <u><신 설></u>																														
2 ~ 4 (생 략)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8. <u>생활폐기물의 처리(보행자전용도로를 포함한 가로청소에 한한다)</u>	「폐기물관리법」 제4조																													
2 ~ 4. (현행과 같음)																															

고양시 원당재정비촉진지구 원당5구역 행위 등의 제한 해제 공고

1. 고양시 고시 제2014-96호(2014. 03. 28.)로 결정 고시 된 고양시 원당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따라 촉진구역으로 지정된 원당5구역에 대하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거 구역해제가 결정 되어 「같은법」 제4조의3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 규정에 의한 지구제척 또는 준치 관리구역으로 변경을 추진함에 따라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8조 제2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규정에 의한 행위 등의 제한을 아래와 같이 해제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6. 12. 27.
고 양 시 장

1. 행위제한 해제 구역 및 위치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사업방식	구 역 위 치	행위제한 해제 위치	비고
원당5구역	재개발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576번지 일원	원당5구역 내 일부 기반시설필지 (대로 3-26호선)	

※ 원당5구역은 2016.05.27. 행위제한 해제(기반시설 필지 제외)하였으나, 금번 공고 시 구역 내 일부 기반시설 필지(재정비촉진계획상 대로3-26호선)에 대하여 추가 행위제한 해제 하는 사항임

2. 원당5구역 행위제한 해제 적용일 : 공고일 부터

3. 행위제한 해제 내용

- 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8조 규정에 따른 행위제한 사항
-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규정에 따른 행위제한 사항

4. 행위제한 해제 제외사항

- 원당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한 기반시설 토지

※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고양시 도시재생과(☎031-8075-31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162호선(화전취락)]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등의 의견 청취 공고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602-4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 3-162호선(화전취락)]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등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27일

고 양 시 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덕양구 화전동 574-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도시계획도로(중로3-162호선)개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 분	폭원 (m)	결정사항		금회 실시계획 시행		비 고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대로3-162	12	571	7,890	207	2,495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성명 : 고양시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고시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2020.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 “바”항과 동일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다, 바”항과 같음

자.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시보게재일로부터 15일간

차.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고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75-3145)

2. 관계도면 : “게재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자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 관계
1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574-3	대	554	68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 33, 807동 104호 (길음동, 길음뉴타운)	정달원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 (을지로2가)	주식회사 국민은행 (수색지점)	근저당
2	“	574-14	전	144	14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176번길 24 (화전동)	조희곤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74 (등촌동)	서울축산업 협동조합 (북가좌지점)	근저당
3	“	575-41	대	199	106	575-1	홍성민			
4	“	575-1	전	917	150	경남 진주시 이현동 8-1 주공아파트 207동 506호	홍성민			
5	“	575-38	전	3,147	11	575-38	김경식			
6	“	575-56	전	116	9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61번길 65-6(정자동)	이영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원로 186, 406동 203호 (판교동, 판교원마을)	류연호			
7	“	575-14	대	136	97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2가 23 벽산아파트 102-1102	유연호			
8	“	575-15	대	69	43	화전 575-15	이영돈			
9	“	575-16	대	129	4	51	장사옥			
10	“	274-6	학	6,504	290	교육부	국			
11	“	575-18	대	374	89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242-17	김옥화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242-17	이창주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242-17	이양주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242-17	이용주			
12	“	575-34	대	152	37	575-19	대한예 수교 장료회 화전중 앙교회			

13	“	575-19	대	664	308	575-19	대한예수교장로회중앙교회			
14	“	575-22	대	752	149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575-27	전광희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27, 102동 3501호	강영권	가압류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5	경기신용보증재단	가압류
									고양시 덕양구	압류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50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748-13 2층	정기섭	근저당						
15	“	575-40	도	88	3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575-27	전광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5	경기신용보증재단	가압류
16	“	575-21	대	119	3	218-2	황규철			
17	“	575-27	대	648	215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575-27	전광희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27, 102동 3501호	강영권	가압류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5	경기신용보증재단	가압류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50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748-13 2층	정기섭	근저당
18	“	575-55	전	315	21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572-9	김종익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26-8	신도농협협동조합	근저당지상권
19	“	212-18	대	112	6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212-18	김상일			
						212-18	조귀천			
						고양시 행신동 204-5 연세빌라 나-107	안병철			
20	“	212-14	전	69	1			기획재정부	국	
21	“	212-15	대	63	3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212-18	김상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203-45	안순애			
22	“	203-45	대	374	15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203-45	안순애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5-10 (사당로지점)	남서울농업협동조합	근저당
23	“	203-48	전	17	17	기획재정부	국			
24	“	203-183	도	33	1	기획재정부	국			
25	“	203-109	대	182	100	203-19	한근수			
26	“	203-28	대	231	76	서울시 종로구 신교동 2-100	성경순			
27	“	203-27	도	152	14	국토교통부	국			